

부산지방법원 2021. 9. 9 선고 2021나41518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전 문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

피고, 피항소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맥

담당변호사 전정숙

변 론 종 결 2021. 7. 15.

판 결 선 고 2021. 9. 9.

제1 심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 12. 22. 선고 2020가소1161 판결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8,678,348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상하수도 설비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C'이라는 상호로 상하수도 설비공사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5. 3. 9. 부산광역시와 사이에 2015년 상수도 급배수관 시설공사(D, 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계약금액 635,153,090원, 공사기간 2015. 3. 12.부터 2015. 12. 31.까지로 정하여 도급받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원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2015. 12. 31. 계약금액이 1,083,288,000원으로 증액되고 공사기간이 2016. 2. 29.까지로 연장되었으며, 그 후 최종적으로 계약금액이 972,985,000원(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계약금액은 884,531,513원)으로 변경되었다.

다. 이 사건 원도급계약이 체결될 무렵, 원고와 피고는 '피고가 그 책임으로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원도급계약상의 계약금액(부가가치세 제외) 중 81%를 기성에 따라 매월 지급한다'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피고는 2016. 3.경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의 인부 등에게 합계 471,894,382원을 직불하였고, 피고에게도 2015. 5. 14.부터 2016. 3. 29.까지 합계 223,094,400원을 지급하였다.

마.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기한 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그에 대해 원고는 피고의 기망으로 편취당한 돈 합계 82,173,990원을 부당이득금으로 반환할 것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 원고의 위 반소에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일하지 아니한 인부 E, F에게 임금을 지급하였다고 기망하여 원고로부터 임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16,653,510원'(이하 '선행 임금'이라 한다)과 '이 사건 공사 현장총무인 G의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퇴직금을 지급하였다고 기망하여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5,000,000원'(이하 '선행 퇴직금'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었다.

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은 2019. 3. 13.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대금 716,470,525원(= 이 사건

원도급계약의 대금 884,531,513원 × 81%)에서 원고가 피고의 인부 등에게 직불한 합계 471,894,382원과 피고에게 직접 지급한 합계 223,094,400원을 공제한 나머지 대금 21,481,743원(= 716,470,525원 - 471,894,382원 - 223,094,400원)이 남아있다'는 이유로 피고의 본소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를 기망하여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가단201063(본소), 2018가단201070(반소)].

사. 이에 대해 원고가 항소하였으나 부산지방법원은 2019. 11. 28.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부산지방법원 2019나46176(본소), 2019나46183(반소)], 위 판결은 2019. 12. 19. 확정되었다(이하 위 각 소송절차를 통틀어 '이 사건 선행소송'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위 노무제공계약에 따라 제공받은 인부들의 인건비를 직접 지급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① 이 사건 공사 현장총무인 G의 퇴직금이 2,975,162원임에도 5,000,000원인 것처럼 원고를 기망하여 2,024,838원(= 5,000,000원 - 2,975,162원)을 편취하였고(이하 '이 사건 퇴직금 청구'라 한다), ② E과 F이 이 사건 공사에 근로자로서 참여한 적이 없음에도 2015. 8.경부터 2016. 2.경까지 E에게 합계 12,265,380원, F에게 합계 4,388,130원의 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원고를 기망하여 위 돈 합계 16,653,510원(= 12,265,380원 + 4,388,130원)을 편취하였다(이하 '이 사건 급여 청구'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법률상 원인 없이 위와 같이 편취한 돈 합계 18,678,348원(= 2,024,838원 + 16,653,51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선행소송에서 선행 임금 청구 및 선행 퇴직금 청구에 대해 이미 기각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고, 이 사건 퇴직금 청구와 이 사건 급여 청구는 위 선행소송의 선행 임금 청구 및 선행 퇴직금 청구와 소송물이 동일하므로, 기판력에 저촉되어 그 자체로 이유 없다.

나. 판단

1)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소송물로 주장된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에 미치는 것이므로 동일한 당사자 사이에 전소의 소송물과 동일한 소송물에 대한 후소를 제기하는 것은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6다222149 판결,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다49981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선행소송에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금으로 선행 임금과 선행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으나, 반소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고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다. 이 사건 선행소송 판결의 확정으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선행 임금 및 선행 퇴직금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하여 기판력이 발생하였다.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소송에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고 있는 이 사건 퇴직금 청구는 위 선행 퇴직금의 일부를 구하는 것이고, 이 사건 급여 청구는 위 선행 임금과 동일한 금액을 구하는 것이므로, 원고의 위 각 청구는 이 사건 선행소송 판결의 기판력에 반하는 주장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나아가 설령 원고의 위 각 청구를 피고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손해배상금으로 구하고 있는 돈은 원고가 피고의 인부 등에게 직불한 돈인 471,894,382원의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인데, 앞서 본 이 사건 선행소송에서 피고는 원고가 인부 등에게 직불한 돈을 모두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대금 지급으로 인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직불한 위 돈을 공제하고도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해야 할 잔여 대금이 남아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이로 인해 원고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각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음은 마찬가지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장병준, 판사 목명균, 판사 이순혁